

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·사무처리 등(안 제3조)
- 나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사무 지원 및 준용(안 제4조)
- 다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인력 등 지원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침

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미시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·사무처리 등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제4조(사무 지원 및 준용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
2.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
3.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
4.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
5.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
6. 남북교류협력 사업
7.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
8. 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

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인력 등 지원)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

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
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
기여한 위원에게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제9조(사무기구)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

통일자문회의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(補)한다.

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,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
2.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20조(집회)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·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.

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,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. 다만,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.

제31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

제3조(대행기관 등)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.

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(이하 "사무처장"이라 한다)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,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.

1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: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
2. 이북5도 대표: 이북5도지사
3. 재외동포 대표: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
4.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: 주무관청의 장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30조(지역협의회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 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도록 하되,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 사무 지원 등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4조 ~ 제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을
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76,733천원 정도임
(지원액 : '16년 80,560천원, '17년 81,080천원, '18년 68,560천원)

4. 작성자

총무과 시정계 박교섭(480-6765)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래 섭
	담 당	김 성 학
	담 당 자	박 교 섭 (480-6765)